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, 연구개발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에 있는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추가하여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2. 9. 28. ~ 2022. 10. 6.)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아목아)부터 차)까지를 각각 자)부터 카)까지로 하고, 같은 목에 아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)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: 외국에 소재한 정부·기관·단체에
소속된 연구자 등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장려금, 체재비 등의
비용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957